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가. 제안이유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 및 동법시행령(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의 개정과 관내 풍치지구가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 삭제 － 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삭제 개정(안 제7조)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안 제17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기준 등 신고사항 완화(안 제18조 및 별표2)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 허가사항 삭제(안 제19조)

○ 식수 등 조경기준에서 관목의 심는 밀도가 과다하여 제곱미터당 3본으로 완화 개정(안 제23조)

○ 교목의 식재기준과 특색있는 공동주택문화를 형성코자 20세대 이상은 상징수 1그루(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를 심도록 신설(안 제23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경에치금제도 폐지로 조문 삭제(안 제24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조문 삭제(안 제25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안의 건축제한 조문 삭제(안 제26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신설(안 제26조의2)

○ 풍치지구의 제1·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에 따른 층수제한 완화(1종 : 3층에서 6층, 2종 : 일반건축물은 6층 이하, 아파트는 중층 이하, 3종 : 층수제한 삭제(안 제28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전면 개정(안 제27조～39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풍치지구 내 건축제한 개정(안 제40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풍치지구 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조문 삭제(안 제44조 및 45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부속시설 조문 삭제(안 제46조～52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 및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건축물 용도규정 조문 삭제(안 제53조 및 54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중 구역의 세분 규정 삭제(안 제57조)

○ 건축물의 용도별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용적률 300%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안 제62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제한은 대지의 분할 제한(생산녹지지역은 1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개정)으로 개정 －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제 완화(안 제65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삭제(안 제66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삭제(안 제67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맞벽 건축허용 신설(안 제67조의2)

○ 건축법 개정에 따른 2 이상의 도로 등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 제68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구역 삭제(안 제69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완화(안 제70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설계 작성방법 조문 삭제 － 도 조례로 정함(안 제71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개공지용도 등 개정(안 제72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완화 신설(안 제73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작물 신고대상을 호이스트, 적재하중 12톤 이상의 냉각탑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2조)

○ 우수건축물 육성을 위한 건축상 제도 신설(안 제83조)

○ 가설건축물 폐기물시설 등의 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완화 및 존치기간 3년(차고시설 2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 28조의 중층은 법적용어가 아니므로 12층으로 수정함이 타당. ○ 조례중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호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는 기호가 혼동되므로 간소화.	○ 조례시행규칙에 중층의 범위를 정할 것임. ※ 중층은 12층으로 규정하겠음. ○ 정비공장(다만, ···한한다)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제외한다)로 수정해도 무방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70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재출년월일 : 1999. 7. 3
재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 수정이유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건축물의 신고사항이나 가설건축물의 경미한 사항까지 대행을 할 경우 건축사협회에서 업무과다로 반발 우려

○ 제19조2항의 단서 규정은 관내의 대형건물 신축은 대부분 타지역에 있는 건축사에 의하여 건축되므로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하도록 할 경우 부천시의 건축 발전에 저해 우려

○ 교목의 심는 밀도를 평방미터당 0.3본 이상으로 할 경우 교목이 과밀하여 폐목으로 변할 우려가 있음

○ 자동차 관련시설은 기호가 혼동되므로 간소화

□ 주요골자

○ 조례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 제1항의 업무 전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1항의4호 내지 5호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토록 하고 또한 단서 규정은 삭제로 수정

○ 조례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1항 교목의 심는 밀도를 평방미터당 0.3본 이상을 0.2본 이상으로 수정

○ 제28조제1항의11호, 제2항의1호타목, 2호하목, 29조7호, 30조9호, 31조7호, 32조8호, 33조7호는 문맥이 맞지 않아 기호가 혼동되므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로 수정

○ 제28조2항1호자목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주거형태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정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 및 영 제2항을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상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심는 밀도(㎡)	상록수의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 50 낙엽수 :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3본 이상	

안 제28조제1항11호, 제2항1호타목, 2호타목, 제29조7호, 제30조9호, 제31조7호, 제32조8호, 제33조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안 제28조제2항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제1항제1호 내지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은 감리자, 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업무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대한 대행은 설계자 또는 부천시에 등록한 건축사가 행하게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23호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한 것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별지 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임시사용승인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해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생략)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현행과 같음)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심는밀도(㎡)	상록수의 비율(%)	구 분	심는밀도(㎡)	상록수의 비율(%)	구 분	심는밀도(㎡)	상록수의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50 낙엽수:50	····· ····· ·····	·····	····· ·····	····· ····· ·····	0.2본 이상	·····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4본 이상		····· ····· ····· ····· ····	3본 이상		····· ····· ····· ····· ····	3본 이상	
제28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본문 생략)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중 승용자동차 차고에 한한다)			제28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현행과 같음) 11.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①(현행과 같음) 11.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②(생략)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3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②(현행과 같음)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타.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타.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아파트는 중층 이하로 하되 공공기여도에 따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아파트는 중층 이하로 하되 공공기여도에 따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2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본문생략) 11.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은 제외한다)	제2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2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3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3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3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3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3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3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본문생략)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3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3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기타 농업용건축물
2. 단독주택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18조제2항 별표2 창고시설 기타란 중 "존치기간 2년 이하"를 삭제하고, 폐기물 저장시설·공해배출시설의 면적란중 "200제곱미터 이하"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공통사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존치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3)가설건축물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4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표 중 구분란 교목의 심는 밀도 "0.3본 이상"을 "0.2본 이상"으로 하고, 관목의 심는 밀도 "4본 이상"을 "3본 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흉고직경(흉고직경으로 규격을 정할 수 없는 수종은 이에 상당하는 규격으로 한다. 이하 "흉고직경"이라 한다) 6센티미터(지상으로부터 1.2미터 위치의 직경을 말한다)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⑤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흉고직경수종은 20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수종은 30센티미터 이상, 기타수종은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의 상징수를 말한다)의 상징수를 1그루 이상(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3그루 이상) 보기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제24조제5장, 제25조 및 2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도로의 지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7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8조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을 제외하며, 골프연습장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마.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바.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타.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아파트는 중층 이하로 하되 공공기여도에 따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문화 및 집회시설

바.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대지가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공장(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타.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너.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영 별표3 제1호각목에 게기한 건축물

나. 제28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4. 제28조제2항제2호본문 단서사항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0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1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2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4 제2호마목의 공장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동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0.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4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5호마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5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6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영 별표11 제1호 및 영 별표1 제6호가목 내지 다목(다만 농·축산물판매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7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9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40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내지 라목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 및 다목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15미터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8.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9.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10.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12.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4조 및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절을 삭제하고, 제46조 내지 제52조를 삭제한다.

제3절을 삭제하고, 제53조 및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적용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60조·제62조·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2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2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제65조 본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제66조 및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맞벽건축 등) 영 제81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접한 대지 상호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제68조 제목중 "2 이상의 도로가"를 "2 이상의 도로 등이"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3항 단서"로 하고,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구역 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를 당해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③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 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⑤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제1항중 "영 제86조 제1호"를 "영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 "1층으로서"를 삭제하고, 제2호의 "2층으로서"를 삭제하며, 제3호 "3층 이상인 건축물은"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④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정동·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3.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공공용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6.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7. 제2종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8.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9. 운동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10.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11. 공동주택 : 대지면적의 5퍼센트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이행강제금의부과) 영 제121조제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82조제1항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4호를 "호이스트"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영 제118조제2항"을 "영 제118조제3항"으로 하며, "영 별표1 제17호"를 "영 별표1 제13호"로 하고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제14호, 제31호"를 "제12호, 제21호"로 하고,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미관지구 내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83조를 제84조로 하고,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④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제48조본문·제51조·제5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